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1024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:이영실, 곽향기, 김경훈,

김규남, 김성준, 김영철, 김재진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강산, 박승진, 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송도호, 왕정순, 유정인, 윤종복, 이병도, 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 임종국, 정준호, 최민규, 최재란, 한 신, 홍국표 의원(29 명)

1. 제안이유
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
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이관 및 개정된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함.
- 또한, 가로수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제명을 올바르게 수정하고,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가로수의 정의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함(안 제3조).
- 나. 가로수 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한 조례제명 수정반영함(안 제7조의 2).
- 다. 법제처 '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'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다음"을 "다음 각 목"으로, "식재된 것"을 "조성·관리하는 수목"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동일한"을 "일정한"으로, "동일 수종"을 "적정 수종"으로, "식재함"을 "심는 것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(고속국도를 제외한다)
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 다목 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,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 전거전용도로
- 6. "가로수 보호틀"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(이하 "보호틀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8. "가로수 보호대"란 정류장·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 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

한 시설물(이하 "보호대"라 한다)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수립한다"를 "수립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"을 "가로수기 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별표 2과"를 "별표 2 와"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범위 내"를 "범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1 호"를 "제1호"로, "범위 내"를 "범위"로 한다.

제7조제1호라목 단서 중 "식재 할"을 "식재할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범위 대"를 "범위"로 한다.

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상충이 될"을 "상충될"로, "등"을 "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등 안전시설"을 "등의 안전시설물"로, "경우"를 "경우에는"으로, "지체 없이"를 "즉시"로, "하며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"를 "한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제9조 본문 중 "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"를 "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수목의" 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"정하여 심을"을 "정할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대상가로수"를 "대상 가로수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 중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가지치기를 "가지치기를 시행할 때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범위 내"를 "범위"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과"를 "다음 각 호와"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월동중"을 "월동 중"으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과"를 "다음 각 호와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"다음의 각목"을 "다음 각 목"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"바꿔심기를 요하는"을 "바꿔심기가 필요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시기에 점검"을 "경우에 실시"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"별표1의6"을 "별표 1의6"으로, "위탁 하여야"를 "위탁하여야"로 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중 "조성 등" 이"를 "조성 및 관리"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"를 "그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"을 "가로수 조성 및 관리"로, "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"을 "승인을 받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조성 등의"를 "조성 및 관리의"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관리청간"을 "관리청 간"으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 "(가로수관리대장)"을 "(가로수 관리대장)"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1항 중 "합리적"을 "체계적인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아 혀 행 정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3조(정의) -----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가로수"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 1. ----성,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 · 교통환경 개선, 자연생태 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 다음 각 목-----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 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 ----- 조성・관 을 말한다. 리하는 수목-----가. 일반도로, 자동차전용도로, 가.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, 자전거전용 도로(고속국도를 제외한다) 도로 등 「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2조에 따른 도로(고가도로와 지하도로는 제외한다) 나. 특별시도, 구도 등 「도로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법」 제11조 및 제15조에 따 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 른 도로 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

- 다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노선이 \ <삭 제> 지정・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 는 시설
- 2. · 3. (생 략)
- 4. "메워심기"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 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 을 말한다.
- 5. (생략)
- 6. "가로수 보호틀"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 물(이하 "보호틀" 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7. (생략)
- 8. "가로수 보호대"라 함은 정류장 • 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 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 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

도로,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 전거전용도로

- 2. ·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 일정한 -----적정 수종-----심는 것
 - 5. (현행과 같음)
- 6. "가로수 보호틀"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 물(이하 "보호틀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 - 7. (현행과 같음)
 - 8. "가로수 보호대"란 정류장·횡 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 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

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 설물(이하 "보호대"라 한다)을 말한다.

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. 다만, 도로의 상황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- 1. ~ 5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5조(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) ①
 가로수의 수종은 <u>가로수 기본계획</u>
 <u>에 따라 다음</u>의 기준을 고려하여
 선정하여야 한다.
 - 1. ~ 5. (생략)
 -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 은 별표 2과 같다.
- 제6조(식재 위치) 가로수는 도로의 폭,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 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 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 장이 없는 <u>범위 내</u>에서 다음의 각

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
(이하 "보호대"라 한다)을 말한
<u>다.</u>
제4조(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ㆍ시
행) ①
<u>수립하여야 한다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) ①
<u>가로수기본계획</u>
에 따라 다음 각 호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
- 별표 2와
제6조(식재 위치)
범위

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.

- 1. (생략)
- 2. <u>1호</u>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 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 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 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<u>범위 내</u> 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.

3. (생략)

제7조(가로수의 식재 기준) 가로수 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 하여야 한다.

1. 교목

가. ~ 다. (생 략)

- 라.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 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 한다. 다만,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·확장 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 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<u>식재</u> 할 수 있다.
- 2.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수 있다.

1. (현행과 같음)
2. 제1호
<u>범위</u>
– .
3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가로수의 식재 기준)
,
1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
실재
<u>할</u>
2
<u>범위</u>

3. • 4. (생략)

제7조의2(가로수 심의위원회) 관리 청은 다음 각 호 사항을 「서울특 별시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」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 시숲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제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 저로표지판 등 설치)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삭 제

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3. · 4.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가로수 심의위원회) <u>관리</u> 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서울 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서 울특별시 도시숲등 조성·관리 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8조(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:	도
로표지판 등 설치) ①	
	(<u>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</u>
<u> 상충될</u>	등
<u>의</u>	-

③ 등의 안전
시설물
경우에는
즉시
<u>한다</u> .
다만,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
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
하다

- 제9조(식재 시기) <u>식재의 시기는 가</u> 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. 다만, 관리청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 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.
- 제10조(바꿔심기 및 메워심기)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<u>대상가로수</u>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 - 1. ~ 5. (생략)
 - ② (생략)
- 제11조(가지치기) ① 가로수는 자연 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 한 생육, 아름다운 수형,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 설에 대한 시계 확보, 통행공간의 확보, 전송·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 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.
 - ② 가로수 <u>가지치기시</u>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

제9조(식재 시기) <u>가로수의 식재 시</u>
<u>기는 수목의</u>
<u>정할</u>
제10조(바꿔심기 및 메워심기) ① -
<u>대상 가로수</u> -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가지치기) ①
- 범위
· ② 가지치기를 시행할 때
<u> </u>

야 한다. 다만, 관리청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 지치기를 제1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 ③ 삭 제

- ④·⑤ (생 략)
- ⑥ 시장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 지치기 사업 중 서울특별시도에서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비를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병해충의 방제) 관리청은 병 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 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~ 4. (생략)
 - 5. 월동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 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.
 - 6. (생략)
- 제14조(지형과 토양 보호)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 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하다.
 - 1.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

٦.
④·⑤ (현행과 같음)
6
HJ Ol
- <u>범위</u>
제12조(병해충의 방제)
- 다음 각 호와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월동 중</u>
6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지형과 토양 보호)
다음 각 호와

에 대한 절토·성토 등 지형변 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<u>다음의 각목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~ 라. (생 략)

2. ~ 5. (생략)

제16조(점검) ① (생 략)

- ② 점검대상은 <u>바꿔심기를 요하는</u> 가로수, 병충해의 감염여부, 고사 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,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 로 한다.
- ③ (생략)
-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·메워심기·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.
- 제18조(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 위탁) ① (생 략)
 - ② 제13조에 따라 가로수의 외과 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 제12조의 9제1항 관련 <u>별표1의6</u>의 수목진료 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「산

다음 각 목
,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점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바꿔심기가 필요한
③ (현행과 같음)
4)
4
<u>경우에 실시</u>
제18조(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
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
별표 1의6

림조합법」제108조에 따른 산림 조합중앙회에 <u>위탁 하여야</u> 한다. 제18조의2(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) ①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등(이하 "가로수 <u>조</u> 성 등" 이라 한다)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<u>조성 등</u> 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 다.
- 제22조(관리의 협의 및 재정) 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

<u>위탁하여야</u>
제18조의2(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
승인) ①
조성 및 관리"
②
\\
<u>-</u>
·
③ 가로수 조성 및 관리
승인을 받
,
④ 조성 및
관리의
?— .
제22조(관리의 협의 및 재정) ①